보험산업과 신탁

교보생명 김계완

CONTENTS

Ⅰ. 종합재산신탁 (필요성)

Ⅱ. 종합재산신탁 활용 사례

Ⅲ. 종합재산신탁 활성화의 제한사항

Ⅳ. 제도개선 방안

CONTENTS

Ⅰ. 종합재산신탁 (필요성)

Ⅱ. 종합재산신탁 활용 사례

Ⅲ. 종합재산신탁 활성화의 제한사항

Ⅳ. 제도개선 방안

국가별 초고령화 진행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7%→14%)	초고령사회 도달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년	12년
독 일	1932	1972	2009	40년	37년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년	20년
미 국	1942	2015	2036	73년	21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15년	39년
한 국	2000	2017	2026	17년	9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

고객니즈 관점의 보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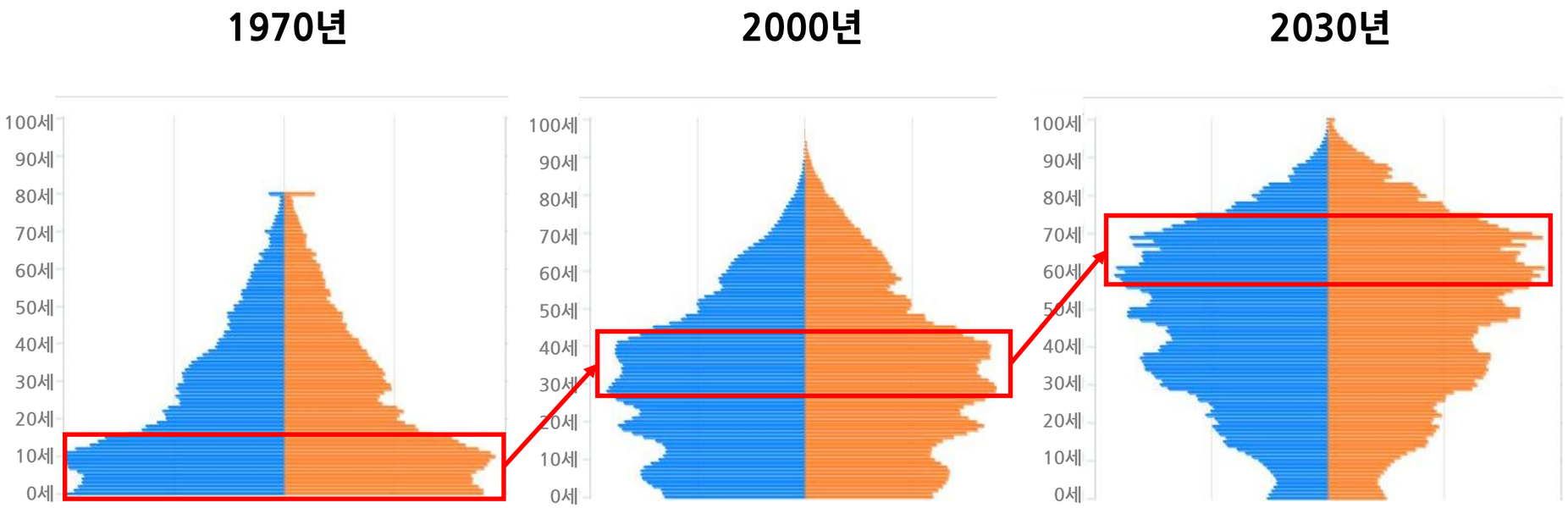

[교육보험]

[연금/종신보험]

[간병·요양·돌봄 현물급부]

[종합재산신탁]

시니어의 재무적 니즈

지금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주고나서 후회가 되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치매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내 재산과 가족들이 괜찮을까?

상속과정에 가족들이 다투거나 불행해지지 않을까?

부자 삼대 못간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업을 첫째가 잘 지킬것 같은데… 둘째, 셋째는 괜찮을까?

상속분쟁

법률신문

상속 전쟁 사회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2024-03-10 06:07

최근 10년간 상속사건 건수는 이혼소송의 2배 가까이 된다. 더욱이 상속분쟁에서 83%는 소송물 가액이 1억 원 이하다.

최근 10년 사이 법원의 상속사건 건수는

이혼소송 두 배 가까이나 되는 5만 6천건이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상속분쟁에서 83%는

소송물 가액 1억 원 이하다.

상속분쟁의 상당 부분은 유류분에 관한 다툼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590건이었던 것이

2022년 1,872건으로 약 세배 가량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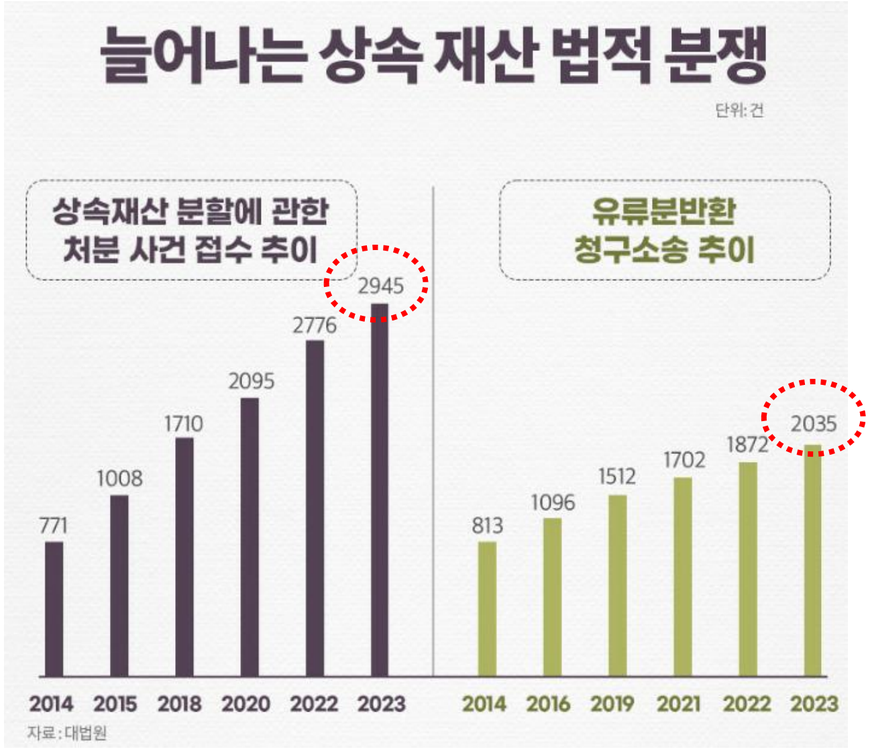

치매 머니 Issue

朝鮮日報

2025년 05월 26일
B07면 (금융/재테크)

154조원 '치매 머니'로 안 묶이려면… 유언 대용 신탁 활용하라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치매 치료 등에 활용 가능

현행법상 개인이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 능력을 상실하면, 누구도 그 환자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자식이어도 안 된다. 사후 상속이 이뤄질 때까지 이 돈은 계좌에 묶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치매 인구는 124만명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 즉 '치매 머니' 규모는 154조원에 달한다. 2030년이면 220조원으로 늘어난 이후 2040년 351조원, 2050년이면 488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아픈 몸을 치료하려고 해도, 법 때문에 제대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병을 얻기 전에 자산을 '치매 머니'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각종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언 대용 신탁이다. 고객 사망 후 금융사가 고객과 계약한 대로 자산을 배분하거나 상속토록 하는 신탁 상품인데, 금융사들은 이 유언 대용 신탁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치매 치료에 치매 머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리빙트러스트'는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고객의 자산을 지급 청구 대리인에게 지급해 병원비와 간병비 등에 쓸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 딸을 지정했다면, 부모의 치매 치료나 생활에 필요한 병원비와 요양비 등을 부모 자산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KB위대한 유산'과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치매 머니 활용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토탈 종합재산 신탁' 서비스를 내놨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치매보험 가입을 연계하고, 치매 발병 시 이상 거래를 감지해 통지하는 시니어용 카드를 개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매 머니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 자산을 좀 더 쉽게 유동화해 치매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들이 내놓은 치매 머니 관련 상품은 정신이 또렷할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라 갑작스럽게 치매가 올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치매 머니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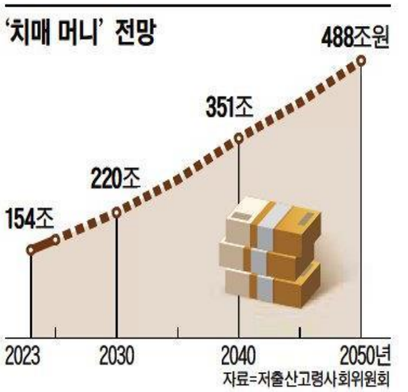

※ 일본의 치매머니는 2020년 기준 한화 약2천400조 원 (일본 연간 GDP 40%)

일본 초고령화와 포괄신탁(국내-종합재산신탁) 확대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자산 비중 증가(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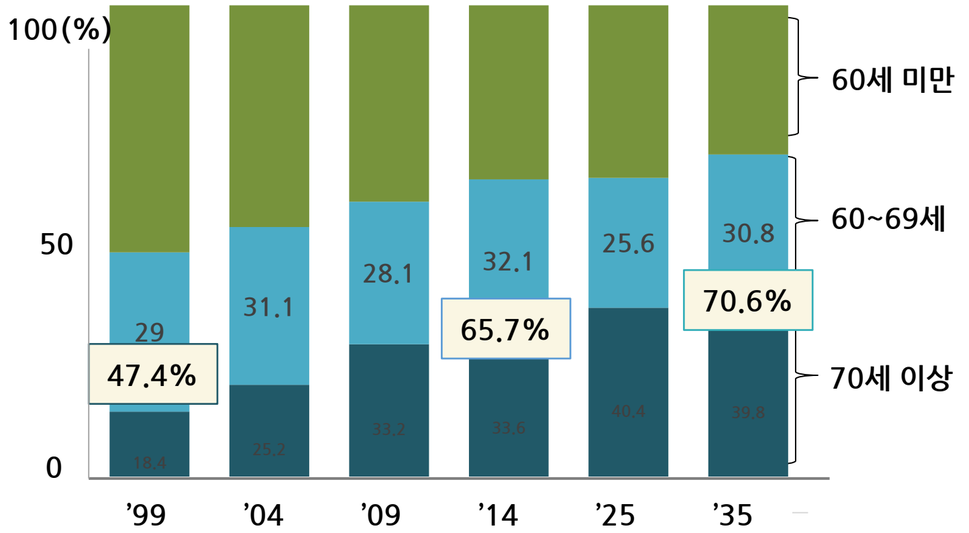

출처 : 일본 통계국, 금융청

고령화에 따른 종합재산신탁 시장 확대(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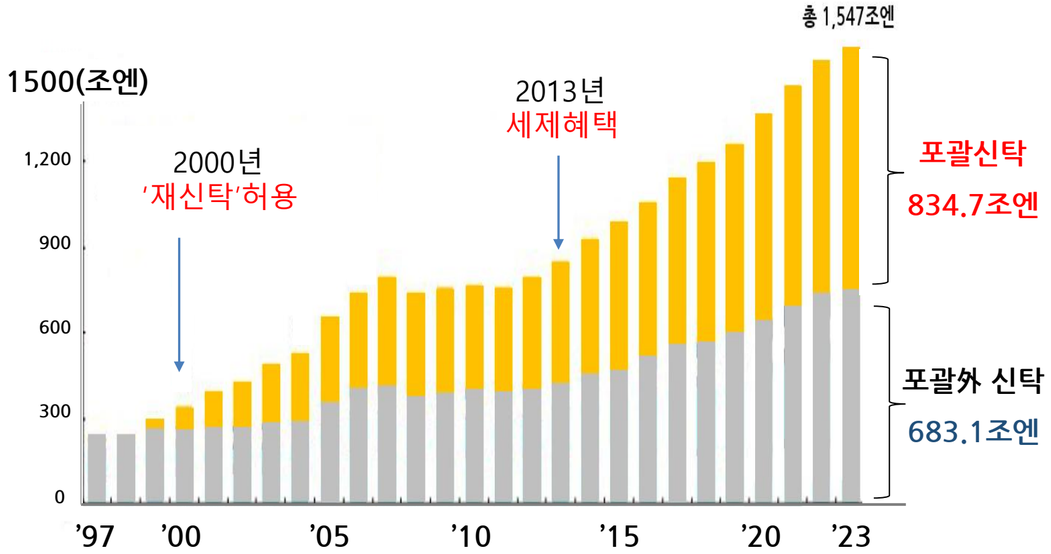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신탁협회

[한국 60대 이상 보유자산 비중]

27.4%('12년) ▶ 33.4%('17년) ▶ 42.1%('23년)

[한국 종합재산신탁 시장]

8,791억('20년) ▶ 1.34조('21년) ▶ 2.05조('22년) ▶3.3조원('23년)

초고령화시대 종합재산신탁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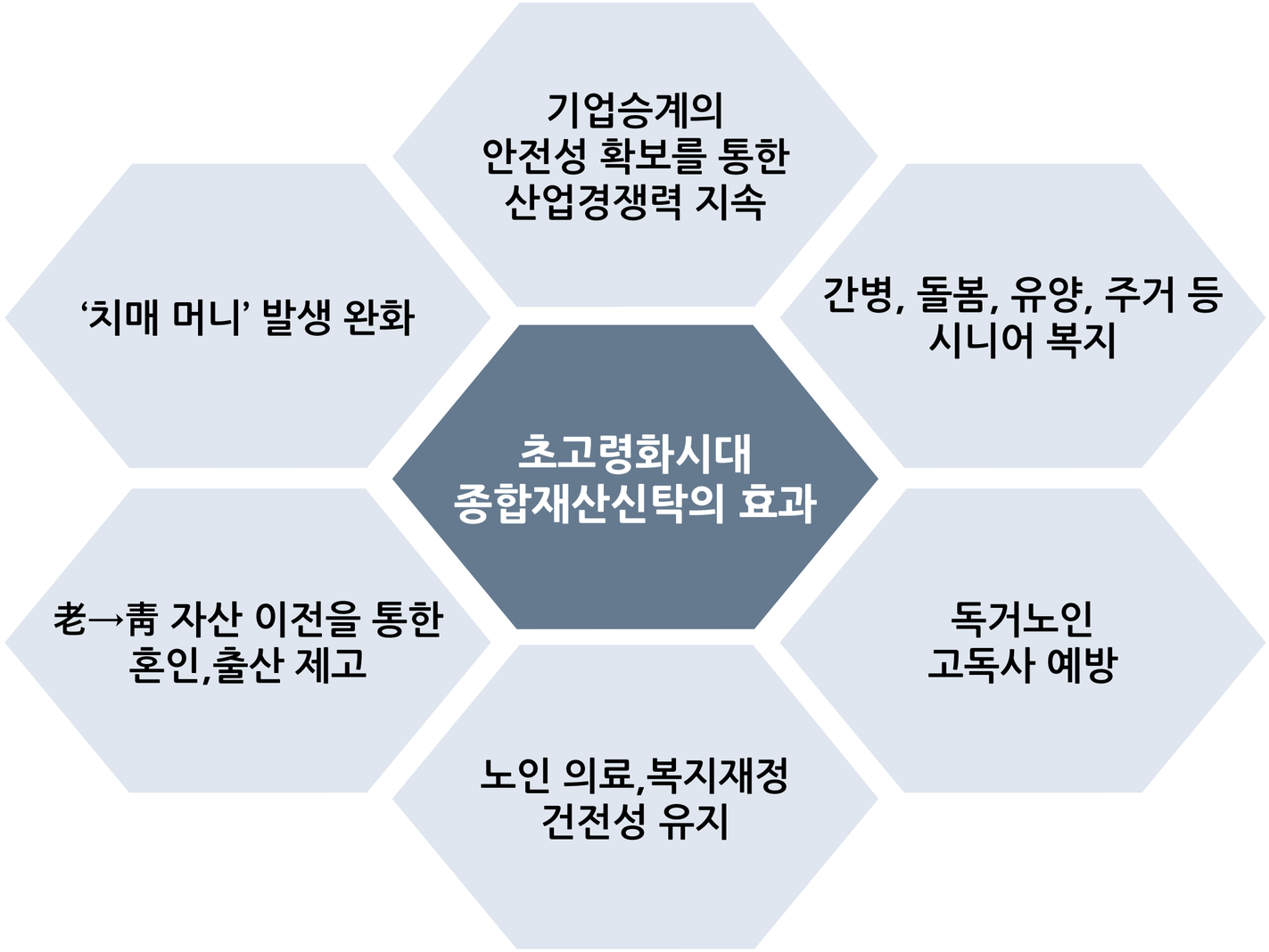

CONTENTS

Ⅰ. 종합재산신탁 필요성

Ⅱ. 종합재산신탁 활용 사례

Ⅲ. 종합재산신탁 활성화의 제한사항

Ⅳ. 제도개선 방안

시니어 관련 종합재산신탁 종류

□ 재산을 직접 관리·통제할 수 없는 상황(사망,중증질환 등)에 대한 Solution

구 분	내 용
유언대용신탁	사후에도 상속재산의 관리 및 통제 가능 (‘부자삼대 못간다’ 예방)
증여신탁	증여 후에도 재산관리 및 통제 가능
장애인신탁	5억까지 장애인 증여시 비과세 혜택 * 일본 비과세 신탁 : 결혼, 출산, 양육비, 손주 학자금
후견신탁	법률상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와 돌봄 / 치매머니 예방 가능
보험금청구권신탁 (’24.11 시행)	보험의 목적에 맞게 사망보험금이 사용되도록 재산관리 및 통제 가능

유언대용신탁

Q. 속썩이는 아들과 착하고 성실한 딸

父 74세

母 70세

- 거주중 아파트 1채(15억)
- 상가건물 120억
- 예금 및 현금 7억

▶ 사후에도 건물 매각을 원하지 않음

- 무직, 미혼
- 경제관념 없음

- 직장인
- 경제관념 투철함
- 듬직한 사위와 결혼

유언대용신탁 _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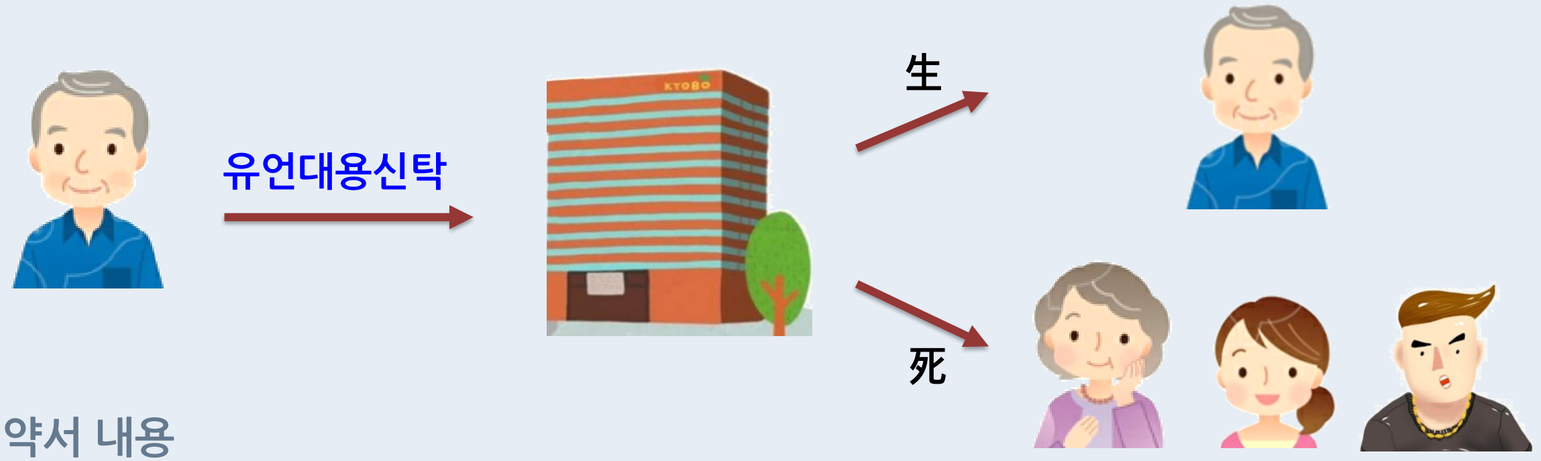

★ 신탁계약서 내용

☞ 生 : 신탁사가 건물을 관리하며 생존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수입을 위탁자 본인(父)에게 지급

☞ 死 : • 위탁자 사망시 딸에게는 건물의 ½ 을 상속(건물 소유권 이전)

• 건물의 ½은 신탁사가 계속 관리하며 아들에게는 임대료만 지급 (일정조건 충족시 소유권이전)

• 거주중인 아파트와 예금 및 현금은 배우자(母)에게 상속함

유언장 보다 좋은점

- 유언장은 상속 이후 **재산통제** 기능 불가
- 사후까지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유언대용신탁 응용 [기업승계 유류분 문제]

CASE

홍길동(78세)CEO는 재혼가정으로 **전부인 사이에 장남, 현부인 사이에 차남**을 두었다.
법인사업체 CEO이며 **주식은 본인 70%, 현부인 30% 보유중**이다.
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으나, 본인의 주식 70% 모두를 장남에게
상속하여도 현부인과 차남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되면 장남이 50%이상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하기 어려워 고민이다.

SOLUTION

홍길동CEO주식 15%를 유언대용 신탁하고,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하여
15%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장남에게, 배당권리는 현부인과 차남에게 실행하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배당권리를 가지는 현부인과 차남은 상속유류분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남이 55%의 주식의결권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

증여신탁

Q.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하지만, 재산을 빨리 주고 싶지는 않은…

父 70세

- 거주중 아파트(15억)
  상가건물(75억)
  원룸건물(25억)
  예금 및 보험(6억)

▶ 원룸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절세목적 증여 권유를 받음

母 65세

- 기혼 / 공무원
- 경제관념 투철함
- 아파트 기증여

- 신혼 / 소규모 커피점 운영
- 수차례 창업 실패
- 착하지만 귀가 얇음

증여신탁 _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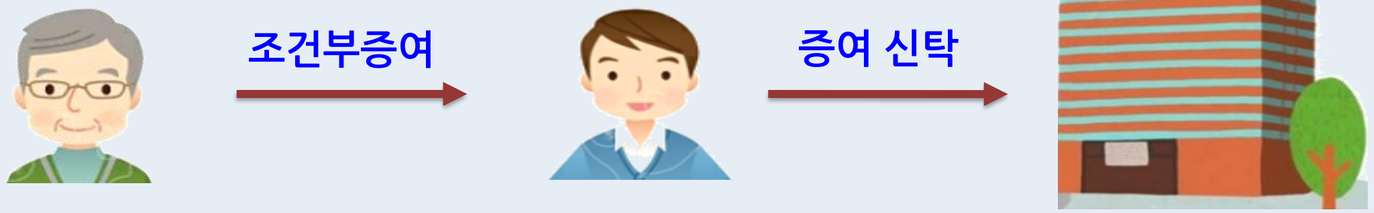

★ 계약 내용

아들에게 조건부증여 후 증여신탁 계약 (이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조건 : 매도·대출 불가 / 이혼 / 기타 중요 사유 발생 및 증여자 요청 시 증여 계약 해제 및 소유권 반환

증여신탁의 장점

- 증여세 신고 납부를 통해 **절세의 목적 달성**
- **증여 이후에도 재산과 자녀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
- 증여재산 환원 소송 불필요

장애인신탁

Q. 장애인(자녀,배우자,기타)에게 증여세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父 사망

母 70세

- 거주 중 아파트(10억)
  구분 상가(5억)
  예금,보험 등 기타 (7억)

- 회사원 / 기혼
- 성실함

- 지적장애 3급
- 사회적기업 근무

장애인신탁 _ Solution

장애인에게 증여세 없이 (5억원) 재산 증여 가능

장애인신탁

수익지급

5억원 현금 증여시	
일반증여	8천만원
신탁활용	0원

8천만원 절세

10억원 아파트 증여시	
일반증여	225,000,000원
신탁활용	80,000,000원

1억 4,500만원 절세

★ 딸을 아들의 임의후견인으로 지정 후 재산 관리 요청

장애인신탁의 장점

- 증여세 비과세 (부동산, 유가증권도 가능)
- 가족,타인도 수익자 장애인이면 비과세 증여 가능

후견신탁

Q. 치매 진행에 대한 재산관리 고민

父 사망

母 80세

- 자산 : 아파트·상가·예금 등 총 40억
- 초기 치매 증상

▶ 최근 셋째인 아들과 오해가 잦음

첫째 50세

- 결혼
- 미국 이민

둘째 48세

- 간호사/결혼
- 세종시 거주

셋째 41세

- 어머니와 동거
- 미혼/직업 불안정

후견신탁 _ Solution

치매, 급성 중증 뇌질환 등에도 안전한 재산관리 및 생활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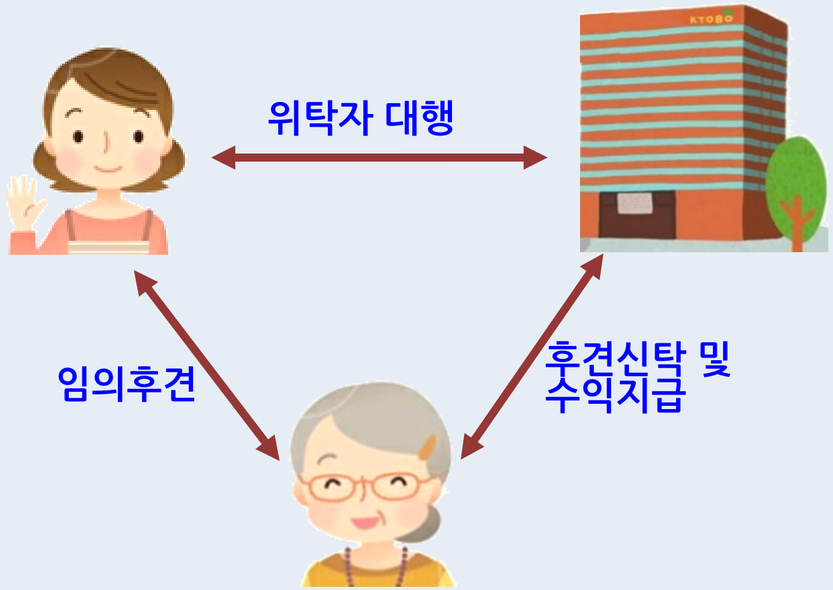

★ 후견신탁 계약

- ☞ 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법원)
- ☞ 중증치매 전 : 모친 직접 재산 관리
- ☞ 중증치매 후 : 딸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사용 - 수탁사는 사용내역 확인 후 지급
- ☞ 사망 시 잔여재산 자녀에게 1/3씩 상속

후견신탁의 장점

- **치매 /중증질환시 계좌동결·부동산 거래 불가 문제 해결**
- 안전한 요양 및 간호, 생활 보호
- 안전한 재산관리와 상속

치매머니 응용

CASE

70세의 홍길동 씨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고,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있다. 어느 날 홍길동 씨는 거동이 불편하여 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 점점 몸이 말을 안들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홍길동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요양원으로 옮겨져 4년후 사망하였다.**

홍길동 씨는 쓰러지기 전 예금에 3억원, 주식계좌 1억원과 아파트 6억원 등 10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지만, 급하게 찾아온 뇌질환과 사고능력의 상실로 **계좌에서 출금을 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팔 수도 없었다**.

아들과 딸은 4년 동안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큰 큰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있어도 전혀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병원비나 요양비로 사용했으면 내지 않아도 되었을 **상속세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SOLUTION

중증 뇌혈관 질환 등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되므로, 60대 이상이며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면, **예금은 수시입출금 신탁계좌로, 부동산 등은 관리처분신탁**을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재산의 처분, 관리를 통해 의료,간병, 요양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

Q. 아들을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내 뜻대로 사용되기를 …

父 49세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5억

이혼

母 45세

- 사치 심한편 (경제관념 無)
- 부부사이 좋지 않았음

子 9세

종신보험(일반사망보장) 가입의 주요 목적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어 **경제력이 없는 자녀**의 삶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보험금청구권신탁 _ Solution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정하고 보험금 사용 방식을 생전에 설계하여 사후 통제

보험금 청구 및 관리(교보생명 신탁부서)

신탁수익자 : 자녀

☞ 예시 : 매월 300만원(생활비/양육비 사용내역 통제) + 학원비 등 직접 송금

잔여재산은 자녀 25세에 자녀에게 직접 지급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장점

-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의사가 아닌 **계약자, 피보험자의 목적대로 집행** 가능
- 보험금 범죄 예방 가능

CONTENTS

Ⅰ. 종합재산신탁 필요성

Ⅱ. 종합재산신탁 활용 사례

Ⅲ. 종합재산신탁 활성화의 제한사항

Ⅳ.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자본시장법은 종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2007.8.3일 제정 및 2009.2.4 시행됨

제정 목적

(1)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 개별적인 금융투자업자 진입요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을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한다.

(2)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제

- 금융투자업의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투자업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기능별 규제를 도입한다

(3)투자자 보호의 강화

- 금융투자상품 개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로 인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서,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한다.

■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관리형신탁' 의 의의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금전등"이라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 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 " 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 **총칙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관리형신탁'이 제외된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었으나,'관리형신탁'이 동법의 규제사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인 신탁'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지 않음**

자본시장법의 규제(본질적업무_재신탁 규제)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 40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본질적업무의 범위 등)

①법 제42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법의 열거주의(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자본시장법 제 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3천만원)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3)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보험계약자 본인** 나)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4)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이 없을 것

자본시장법의 규제(의결권 제한)

자본시장법 제 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민법(가족법)의 후견제도 실효성(임의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은 질병,노령,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을 대비하고자 자기결정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지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임. 다른 성년후견제도와 다르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

법제도 요건

① 임의후견인 이외에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가족 이외의 자) 선임되어야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됨

② 후견받고자 하는 자와 임의후견인이 될 자 간에 후견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방식은 반드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을 등기하여 후견등기부를 작성해두어야 함

③ 임의후견감독인은 민법 제959조 16 제1항에 따라 임의후견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음
(지난 10년간 229건밖에 없다는 언론 보도자료)

■ 현실적 실효성의 문제 (일반 고령자 보호관점에서 활용이 어려움)

① 공증,법원심사,감독인 절차복잡&비용부담 ② 재산사용 관련 번거로움(법원 승인)

CONTENTS

Ⅰ. 종합재산신탁 필요성

Ⅱ. 종합재산신탁 활용 사례

Ⅲ. 종합재산신탁 활성화의 제한사항

Ⅳ. 제도개선 방안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제언)

제언 1안) 자본시장법·신탁법 제정 목적에 따라 '관리형신탁'의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 **신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정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관리형신탁' 의 경우 현금은 '원금보장형, 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위탁자의 처분 지시에 의해서만 재산 관리,보전,처분하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탁법 적용만으로 충분할 것임**

☞ **기대효과**

- 자본시장법 42조 '본질적업무' 규제 제외로 '재신탁 '가능 _ 일본의 경우 2000년 재신탁 이후 포괄신탁의 활성화 가능
- 자본시장법 103조 '열거주의' 규제 제외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일반사망보험' 이외의 다양한 보장성보험으로 확대 가능
- 자본시장법 112조 '의결권 제한' 규제 제외로 기업승계의 실효성 확대

제언 2안) '관리형신탁'에 대한 세부적 예외 적용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유인 확대 제도_일본 사례 도입 필요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감면

대상속시대 도래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조세회피 감소

증여신탁 증여세 감면

老→靑 자산이전 확대를 통한 혼인,출산율 증가 효과

후견신탁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재산세 감면

① 자신의 재산으로 의료,간병,요양함에 따른
국가의료,복지재정 건전화

② 치매머니 감소로 내수경제 활성화, 노인문제 완화

③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완화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보험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 확대 및 범죄예방
(의료,간병,사망보험금 등의 목적에 맞는 자금 활용)

[표] 미국과 일본의 상속·증여관련 대표상품

국가	목적	상품	주요 특징
	절세	유보형 증여신탁(IDGT)	• 신탁설정 이후 자산증가액(기업가치, 부동산 상승)에 대한 상속·증여세 미부과
	절세, 노후대비	양도인 연금신탁(GRAT)	• 자산을 수익자(수증자)에게 이전하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
	다음 세대 경제지원	529 College Saving Plan Account	• 교육자금을 세금부담없이 증여하고, 장기 운용을 통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학자금 부담을 경감
	다음 세대 경제지원	교육자금증여신탁	• 교육자금을 세금부담없이 증여
	가업승계	의결권유보형 사업승계신탁	• 자산은 이전하되 의결권은 보유하여 경영참여 계속

신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_일본 통계

[일본 치매환자 금융자산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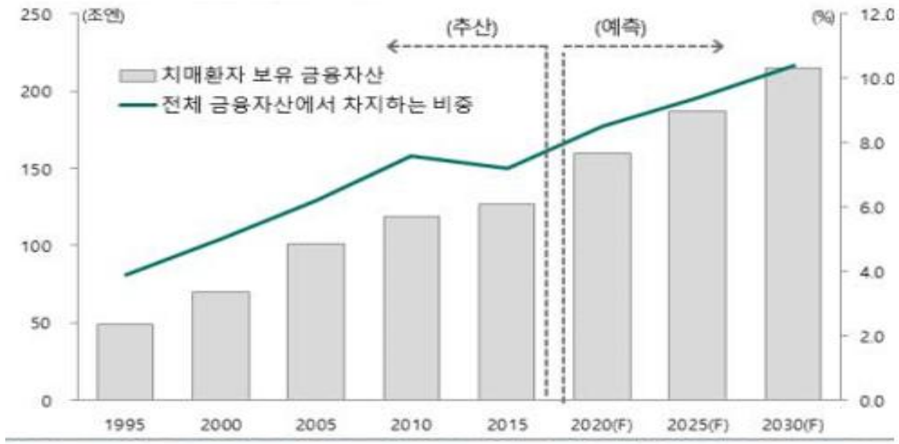

[일본 (치매)후견신탁계약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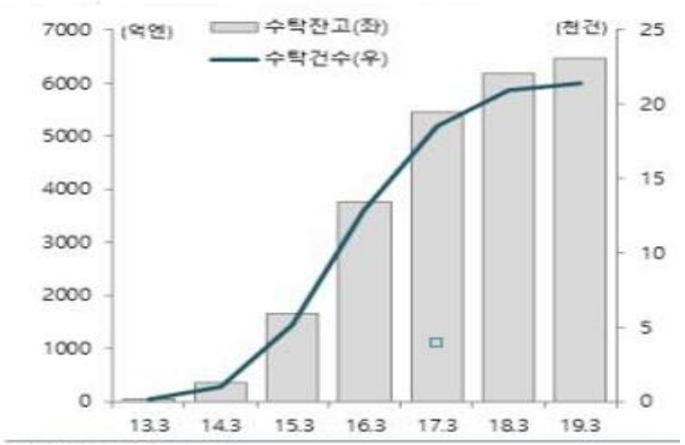

일본 교육자금증여신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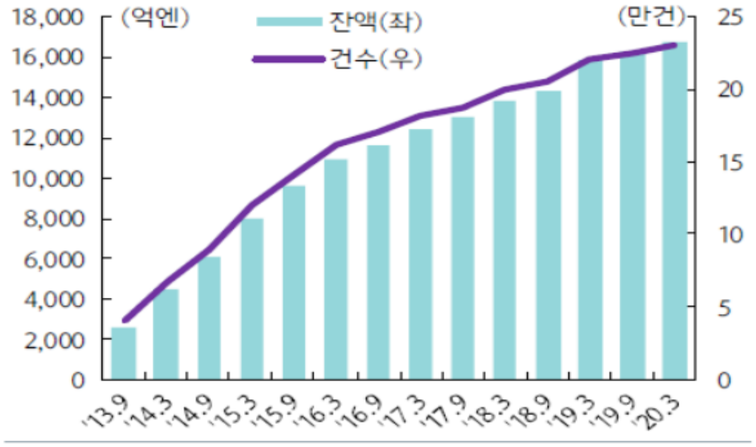

일본 결혼·육아지원신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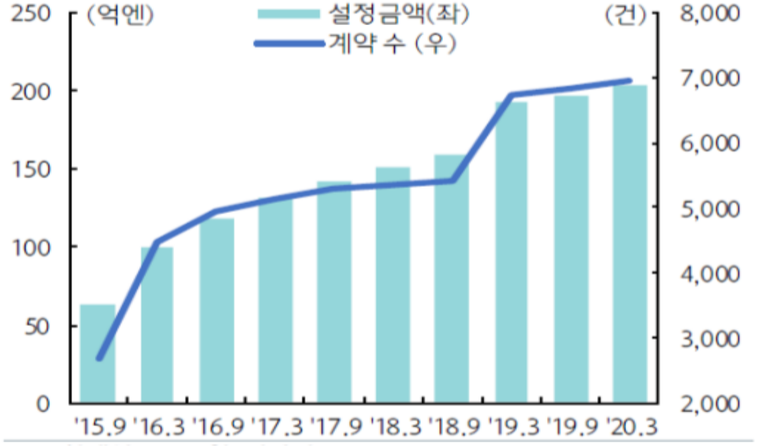

신탁 가능 재산 (실질적)확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감사합니다

'25 종합자산관리팀